

『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
-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3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(안 제3조)
 - 경영개선자금, 소규모시설개선자금, 경영컨설팅, 선진 유통기법 교육,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등
- 특례보증 지원 등 (안 제4조)
 -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
- 이차보전 등(안 제5조)
- 보증재원 (안 제6조)
 -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예산범위 내 출연
- 지원중지 및 환수 (안 제7조)
-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규정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
-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

5. 검토의견

-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,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(2천만원 이내) 및 이차보전 지원(연 3%, 2년 이내)을 함으로써
- 저 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